

의안번호	2202980
의 퇴 인	김승수의원
회 답 일	2024. 8. 29.
추계번호	24C2998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조제3항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의 활용 및 연계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2	안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의 수출경쟁력 촉진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국제전시회 등의 참가 지원을 할 수 있음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 국제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	재량규정
3	안 제12조제2항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부는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 지원 및 해외 시장에서의 한국애니메이션 및 공동제작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4	안 제13조의2(사회적 약자의 애니메이션 문화향유 보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애니메이션 진흥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의 애니메이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5조제3항 (애니메이션산업의 활성화)	실시 중
2	안 제11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실시 중
3	안 제12조제2항 (지식재산권의 보호)	재정사업규모 등 예측 곤란
4	안 제13조의2(사회적 약자의 애니메이션 문화향유 보장)	재정사업규모 등 예측 곤란

2. 상세사유

- 개정안 중 애니메이션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재정 지원(안 제5조제3항)과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제11조)의 경우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표] 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재정수반요인	현행 사업(2024년)
애니메이션 지식재산 활용 및 연계산업 활성화를 위한 금융 및 재정지원 (안 제5조제3항)	콘텐츠 분야 관련 펀드 조성 - 콘텐츠 IP 펀드 2,000억원 - 문화일반펀드 800억원 - 콘텐츠 신기술 펀드 1,000억원 - 콘텐츠 수출펀드 1,500억원 - M&A·세컨더리 펀드 1,000억원 - 영화펀드 650억원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안 제11조)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지원(1,060백만원) 애니메이션 해외방영 지원(500백만원)
지식재산권의 보호 (안 제12조제2항)	해외저작권 보호협력(6,201백만원)

-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피해방지 기술 지원 등(안 제12조제2항)
 -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의 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관련 피해 방지를 위한 기술지원 사업과 해외시장에서의 한국애니메이션 및 공동제작애니메이션 지식재산권 보호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정부가 신규로 추진할 관련 사업 규모 및 지원기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사회적 약자의 애니메이션 문화 향유 보장(안 제13조의2)
 - 개정안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사회적 약자의 애니메이션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신규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되나, 현시점에서 정부가 신규로 추진할 사회적 약자의 애니메이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사업의 규모 및 지원기준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추정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상의 논의를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현시점에서 개정안에 따른 지출 증가액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함

Ⅲ. 부대의견

- 없음

I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